

산 학 협 동 협 약 서

제1조(목적)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과 대구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은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제2조(지원)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로가 협조한다.

1. 각종기술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
2. 학생들의 현장학습 및 교육장소 협조
3. 공동 연구 시 상호 시설장비 이용 협조
4. 기타 협의에 의해 필요한 사항

제3조(연구) 양 기관은 상호협의 하에 관련분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.

제4조(시설 공동활용) 양 기관은 상호협의 하에 필요시설을 교육의 장이나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다.

제5조(기타사항) 본 협약 추진에 수반되는 기타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협의 하여 결정한다.

2001년 10월 16일

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

대구대학교 자연과학대학

이사장 양 용



학장 윤 용 회

